



보도 일시	2026. 1. 22.(목) 12:00 <1. 23.(금) 조간>	배포일	2026. 1. 21.(수)
담당 부서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담당자	정은선 팀장(043-880-5831) 김성유 조사관(043-880-5837)

[안전 실태조사 결과]

해외구매대행 전동보드,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이용 주의해야

전동외륜보드·전동스케이트보드 등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전동보드는 ‘구매대행 특례’ 품목으로 지정*돼 안전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제품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5조(구매대행의 특례)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 전동보드(Electric personal mobility)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전동외륜보드’와 ‘전동스케이트보드’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판매가 많은 해외제품 7종을 선정해 안전기준(최고속도 25km/h 초과 여부)과 이용실태를 시험·조사했다.

<조사대상 전동보드>

전동외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전동보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함.

□ 조사대상 제품 7종 모두 최고속도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전동보드(Electric personal mobility)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품목으로 안전기준이 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최고속도(25km/h) 등 안전 요건 시험을 통과하고 KC마크를 획득한 경우에만 시중에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전동보드 제품의 경우 ‘구매대행 특례’에 해당해, KC마크를 획득하지 않은 제품도 판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오픈마켓에서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 중인 전동외륜보드 2종, 전동스케이트보드 5종을 확인한 결과, 판매 페이지 상의 최고속도 표기가 35~60km/h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 안전기준 최고속도인 25km/h에 맞지 않았다. 또한 각 제품의 주행 속도를 시험·측정한 결과에서도 모든 제품의 최고속도가 25km/h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제품의 사업자에게 최고속도 25km/h 초과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며, 4개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 전동외륜보드(2) : 둠칫둠칫고양이, 다올바이크 / 전동스케이트보드(2) : 더직고(TGGO), 에이플래닛

□ 전동외륜보드 이용자 45%는 안전모 미착용해 상해 위험 있어

전동보드는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신체에 받는 충격이 커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동외륜보드 이용자 20명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45%(9명)에 달했다. 또한 안전모를 착용한 45%(11명)의 경우에도 야간 주행 시 후방 추돌을 예방하는 반사체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팔·다리 등 기타 보호장구를 착용한 이용자는 10%(2명)에 그쳐 안전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 주행 실태도 점검이 필요했다. ‘전동외륜보드’와 ‘전동스케이트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용자의 45%(9명)는 보도와 차도를 번갈아 주행해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었다.

□ 해외 구매대행 이용 시 국내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선택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전동보드 주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해외 구매대행 품목들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 부합 여부 지속 모니터링을 건의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전동보드를 구매할 때 안전관리기준(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것, ▲이용 시에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후방 반사판이 있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최대속도인 25km/h 이하로 주행할 것을 당부했다.

- 붙임 1. '전동보드 안전실태조사' 개요
- 2. '전동보드 안전실태조사' 결과
- 3. 전동보드 소비자 안전 수칙
- 4. 전동보드 관련 주요 법령 및 안전기준

1 조사 목적

- 전동외륜보드 · 전동스케이트보드 등의 전동보드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데, 안전기준 준수 의무가 없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됨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
- ‘전동보드 안전실태조사’ 를 실시하여 소비자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확보에 기여

2 조사 대상

-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해외구매대행 제품 중 사용자 경험(리뷰, Q&A)이 많고, 안전기준 상 최고속도 25km/h를 초과하여 표기한 전동외륜보드 제품 2종, 전동스케이트보드 제품 5종 선정
- 수도권 및 충청지역 등의 전동외륜보드 이용자 20명

3 조사 내용 및 방법

조사 내용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보드 국·내외 안전기준 및 정보 검토 	문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보드 주행 시험 - (최고 속도 시험) 전동보드 최고속도 25km/h 초과 여부 확인 시험*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전동보드)」의 최고속도 기준(25km/h) 준용 	시험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보드 이용 실태 - 인명 보호장구 착용 및 적합성* 실태조사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제1항 7.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 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 주행 도로 이용실태 	현장조사

4 조사 기간

- 2025. 4. 1. ~ 2025. 8. 31. (약 5개월)

1 전동보드 주행 시험

□ (최고 속도 초과 여부) 전동외륜보드 2종, 전동스케이트보드 5종을 대상으로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의 안전기준 중 최고 속도 25km/h 초과 여부를 확인한 결과, 100%(7종) 모두 안전기준을 초과함.

<전동보드 최고속도 조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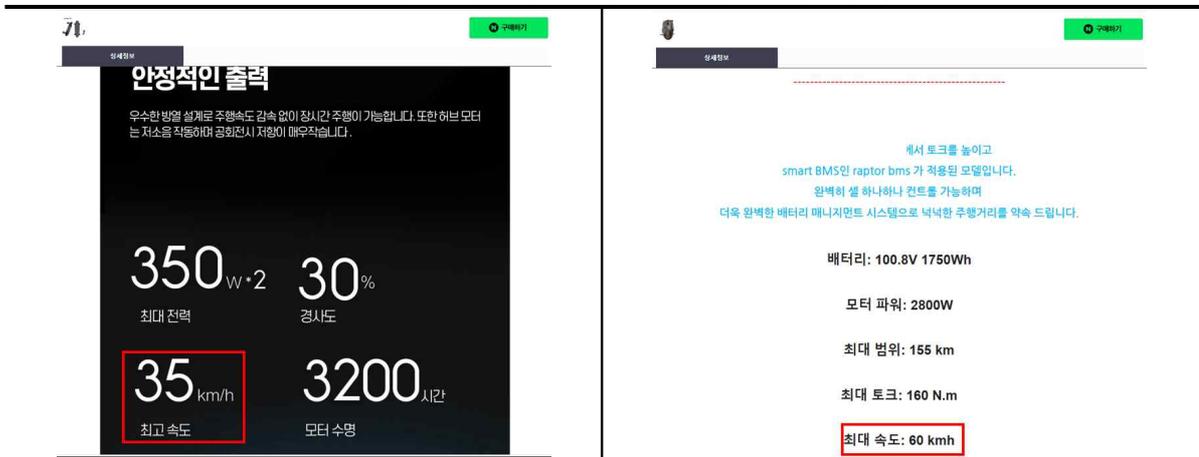
구분	구매대행 업체명	제조사	제품명	제품 표기상 최고속도	안전기준 상 최고속도(25km/h) 초과 여부*
전동 외륜 보드	덤칫덤칫고양이	INMOTION	V11Y	60km/h	초과
	다올바이크	BEGODE	T4 PRO	45km/h	초과
전동 스케이트 보드	더직고(TGGO)	OWNBOARD	BAMBOO PRO	50km/h	초과
	고루고	STARBOARD	XT2 NEO	50km/h	초과
	밤이전자	MUSULON	컴플리트	35km/h	초과
	에이플래닛	XINYAN	듀얼드라이브	35~40km/h	초과
	이솔	DNASKATE	M8	35km/h	초과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의 최고속도 시험 기준 준용

○ 조사대상 제품의 사업자는 표시 성능상 최고속도가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표시하고 있어, 이를 구매 하는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함.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의 최고속도 : 25km/h 미만일 것

<안전기준 중 최고 속도 초과 표시 사례>



2 전동보드 이용 실태

-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전동보드(전동외륜보드)를 탑승한 이용자 20명을 관찰한 결과, 45%(9명)는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모로서 적합하지 않은 모자 등을 착용했음.

구분	착용	미착용	계
인명보호장구(안전모)	55% (11명)	45% (9명)	100% (20명)

- (인명보호장구(안전모) 반사체) 안전모를 착용한 55%(11명)는 안전모 뒷부분의 반사체가 식별이 어려워 야간 운행 시 후방 추돌의 위험성이 있었음.

구분	미식별	계
인명보호장구(안전모) 반사체	55% (11명)	100% (20명)

- (기타 인명보호장구) 조사대상 중 90%(18명)는 안전모 외 손목·팔꿈치·무릎보호대 등의 기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음.

구분	착용	미착용	계
기타 인명보호장구*	10% (2명)	90% (18명)	100% (20명)

*기타 인명보호장구 : 안전모 외 팔, 다리 등 보호장구

- (주행 도로) 조사대상 중 45%(9명)는 보도를 주행하여 보행자와 충돌할 우려가 있었음.
- 보도를 주행한 전동외륜보드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를 구분 없이 넘나들며 주정차 차량 사이로 튀어나와 본인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음.

구분	보도 이용	계
주행 도로	45% (9명)	100% (20명)

전동보드 소비자 안전 수칙

- 1 후방 반사판이 있는 안전모 착용하기!
- 2 안전모 등 인명 보호 장구 착용 후 이용하기!
- 3 전동보드 이용 전 충분한 연습은 필수!
- 4 과속 등 무리한 주행하지 않기!
- 5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전동보드 구매하기!
- 6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 이용하기!
- 7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우측 차로 이용하기!

붙임 4

전동보드 관련 주요 법령 및 안전기준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법률 □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은 구매대행을 할 수 있음(제35조).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지정한 것(제2조 제11항 나목).

시행규칙 □ 구매대행의 특례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함(제3조).

* [별표4] 안전확인대상제품 - 2.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 나. 생활 - 7) 전동보드

2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

□ (정의)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여 레저 및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1인용 이동기를 의미함.

□ (대상) 전동보드(Electric personal mobility)이며, 제1부~제6부로 구분함.

제1부 : 전동스케이트보드

제2부 : 전동킥보드

제3부 : 전동이륜평행차

제4부 : 전동외륜/이륜보드

제5부 : 저속전동이륜차

제6부 :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공통안전기준

□ (최고속도) 지시된 시험방법에 따라 평가할 때 25km/h를 넘지 않아야 함.

3 「도로교통법」 관련

법률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할 경우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원동기를 단 차량을 말함(제2조).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h, 차체 중량 30kg 미만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됨.
- 차마(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는 차도로, 자전거등(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함(제13조).
 -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함.
-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함(제50조).

* 인명보호장구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시행규칙

- 인명보호장구의 뒷부분에는 야간 운행에 대비한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제32조).

4 전동보드 법적 지위

- 「도로교통법」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전동보드(Electric personal mobility) 중 일부만 해당함.
 -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모두 차도로 주행해야 하나, 차도와 자전거도로가 구분되었을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함.

<전동보드 종류 및 법령별 법적 지위>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동외륜/이륜보드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외륜 평행차	저속전동 이륜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동보드(Electric personal mobility)**		
도로교통법 원동기장치자전거(차도 주행)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주행)		

* 「도로교통법」상 스로틀형 전기자전거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정함.

**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전동보드, Electric personal mobility)'.

***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km/h 이하,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함.